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4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신설 등	2
2.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8
3. 전기자동차의 성능평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18
4. 공공·민간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조항 정비	25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 및 정기검사 의무화 등	33
6.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보급 확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43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0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무공해자동차의 정의 신설 등

개정안은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충전 규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의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u>15의3. “무공해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u> <u>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u> <u>나.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밀도</u> <u>다.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u> <u>라. 충전에 걸리는 시간</u> <u>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u>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 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u>허용기</u> <u>준</u> (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 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 록 제작하여야 한다.	----- ----- ----- ----- <u>허용기</u> <u>준 또는 제2조제15호의3의 기</u> <u>준</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16호¹⁾에서는 ‘저공해자동차’를 ①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②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²⁾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³⁾에 따른 전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2)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저공해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8조의3 관련)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무공해)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법 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6의2] 일부

그런데 무공해자동차의 기준을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만 규정하기보다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무공해자동차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무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를 저공해자동차와 별도로 신설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중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밀도,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규격 및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적 ‘무공해자동차’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향상된 성능의 무공해자동차 생산을 유도하여 보다 큰 환경 개선 효과를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⁴⁾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자동차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⁵⁾에서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⁶⁾.

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 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시가지 주행가능거리: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5퍼센트 이내

6)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사후관리제도는 운행 단계에서 인증하였던 연비, 주행거리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 반해 동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제작차 허용기준은 제작차 출시 단계에서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목적과 방식이 각각 상이하며, 환경적으로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서는 무공해차 정의 개편 등 법률 체계 상에서의 정비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둘째,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무공해자동차의 정의에서 구체적인 성능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⁷⁾에서 구체적 성능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 이해관계자⁸⁾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법적 정의 안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가목) 및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나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안 제2조제15호의3과 같이 별도의 호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 성능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8)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2.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8조의10제5항 신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76조의17제1항제4호 신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연료공급시설 및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의무운영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1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u> 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 <u>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u> ----- ----- ----- ----- ----- -----.
1.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u> 이	<삭 제>

현행	개정안
<u>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u>	
<u>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u>	<삭 제>
<u>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u>	<삭 제>
<u>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u> <u>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u> <u>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u>	

현행	개정안
<u>기자동차”라 한다) 또는</u> <u>건설기계</u>에 <u>수소가스를 충</u> <u>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u> <u>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u> <u>이라 한다)</u> <u>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u> <u>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u> <u>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u> <u>연료공급시설</u> 3. ~ 6.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u>제3항제1호 ·</u> <u>제1호의2 · 제3호 · 제4호 및 제</u> <u>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u>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u> <u>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u> <u>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u> <u>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u> <u>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u> <u>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u> <u>을 설정할 수 있다.</u> ⑤ ~ ⑱ (생략)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 치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제3호 ·</u> <u>제4호 및 제6호</u>----- ----- ----- ----- ----- ----- ----- -----. ⑤ ~ ⑱ (현행과 같음)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 치계획의 수립) ① ~ ④ (현 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⑤ (생략) <u><신 설></u>	⑤ <u>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u>제76조의17(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 <u>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u> <u>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u> <u>3.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u>

현행	개정안
	<u>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u> <u>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u> <u>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u>

현행	개정안
<u><신설></u>	<u>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u> ②·③(생략) <u>제76조의19(보급지원 받은 자의 의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해당 설치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소가스 생산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해당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에</u>

현행	개정안
	<u>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또는 연료공급시설 및 수소가스 생산시설의 의무운영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및 의무운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u>

첫째, 현행법 제58조제18항⁹⁾에서는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설

9)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 직영 수소충전소 보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8조의11¹⁰⁾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의 설치자와 승인자가 동일하게 규정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주체를 ‘환경부장관’이 아닌 ‘국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주택법」 11)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10) 법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

승인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 제76조의17은 현행법 제58조제3항¹²⁾의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항목을 이동하면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안 제76조의17제1항제4호)’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료인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대한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현행법 제58조¹³⁾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13)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구입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의무운행기간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보조를 받아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운영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천연가스·전기·수소가스 등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의무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충전 인프라의 장기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보임.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3. 전기자동차의 성능평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국가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시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안 제76조의17제3항 신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18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⑱ (생략) 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u><신설></u>	제58조(자동차의 저공해화조치 등) ① ~ ⑱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76조의17(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현행	개정안
	<u>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 1.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u> 2.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u> 3.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u> 가. <u>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나. <u>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u>

현행	개정안
	<u>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u> <u>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u><u>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u> <u>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u> <u>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u> <u>제76조의18(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하거나 융자한 자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1.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성능 평가를 받은 경우</u> <u>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라 성능 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u>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⑥ (생략)	<u>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u> 제94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76조의17제2항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첫째, 개정안 제76조의17제2항은 현행법 제58조제1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실시 근거를 단순 조문이동하면서, 안 제76조의17제3항에서 해당 성능 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작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제48조)¹⁴⁾,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변경인증(제60조)¹⁵⁾ 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

14) 법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15) 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 보칙에 별도의 수수료 조항(제86조)¹⁶⁾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개별 조항에서 수수료 징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 체계상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 조항에 호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 제76조의¹⁸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성능 평가를 받은 경우(제1호)나 성능평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제2호)에는 해당 제작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 발생 시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현행법에서 이루어지는 성능평가는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부정행위는 보조금 환수 및 차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⁷⁾.

16) **법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¹⁸⁾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성능 평가를 위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17)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조금의 환수와 별도로 개정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민간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조항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조항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통합·이동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4 및 제76조의2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삭 제>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	

현행	개정안
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삭 제>

현행	개정안
<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u>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u>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u>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u>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u>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	<삭 제>

현행	개정안
<u>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u> <u>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76조의24(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u> <u>1. 국가기관</u> <u>2. 지방자치단체</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u> <u>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u>

현행	개정안
<신설>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임차계획 또는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의25(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u>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u> <u><신설></u>	<u>게 무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국기기관등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하고 자금을 우선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76조의24제1항</u>----- ----- ----- ----- 6. <u>제76조의24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매·임차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u>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¹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② 국가기관등의 외의 자로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민간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가지 조문을 부문별로 일괄 정리함으로써 법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

19) 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조문 이동]

개 정 안		현 행	조문 주요내용
안 제76조의24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1항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등) 제1항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제2항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제1항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제3항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실적) 제1항	구매·임차 실적의 제출
	제4항	제58조의6제2항 및 제58조의7제2항	구매·임차 계획 및 실적의 공표
	제5항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국가기관등의 장의 업무 평가 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반영 요청
	제6항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홍보 실시
안 제76조의25 (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제1항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3항	무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시 재정적 지원 근거
	제2항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2항	민간부문에 대한 무공해자동차 우선 구매·임차 권고
안 제94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신설	구매·임차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 및 정기검사 의무화 등

개정안은 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구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② 무공해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민간 사업자를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6부터 제76조의28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u>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⑲ (생략)</u> <u><신설></u>	<u><삭제></u> <u>⑲ (현행과 같음)</u> <u>제76조의26(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6조의17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u>

현행	개정안
	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실적 및 계획 3.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6조의27(무공해자동차 등 연료 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u> <u>①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및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 한다)</u> <u>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u>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5. <u>그 밖에 전산망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u> 제76조의28(충전시설의 정기검사) ① <u>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점검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u>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u> 제9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u>

현행	개정안
⑥ (생략)	2. 제76조의2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⑥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58조의10²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0) 법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2030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목표 중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 특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구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역적 배분, 전기자동차의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보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및 전기차 등록 대수('24.12.31.)]

시도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보급대수		충전기 1대당 전기차 수		
	계	비율	급속		완속		계	비율	계	급속	완속
			계	비율	계	비율					
계	414,686	100	47,083	100	367,603	100	712,711	100	1.7	15.1	1.9
서울	62,261	15.0	5,223	11.1	57,038	15.5	95,145	13.3	1.5	18.2	1.7
부산	24,375	5.9	1,898	4.0	22,477	6.1	45,394	6.4	1.9	23.9	2.0
대구	20,498	4.9	1,805	3.8	18,693	5.1	39,189	5.5	1.9	21.7	2.1
인천	22,775	5.5	1,857	3.9	20,918	5.7	55,874	7.8	2.5	30.1	2.7
광주	12,198	2.9	1,036	2.2	11,162	3.0	15,588	2.2	1.3	15.0	1.4
대전	12,462	3.0	1,256	2.7	11,206	3.0	23,863	3.3	1.9	19.0	2.1
울산	7,777	1.9	1,011	2.1	6,766	1.8	10,321	1.4	1.3	10.2	1.5
세종	5,320	1.3	456	1.0	4,864	1.3	4,208	0.6	0.8	9.2	0.9
경기	116,051	28.0	10,887	23.1	105,164	28.6	145,149	20.4	1.3	13.3	1.4
강원	14,448	3.5	2,449	5.2	11,999	3.3	22,228	3.1	1.5	9.1	1.9
충북	14,058	3.4	2,117	4.5	11,941	3.2	27,272	3.8	1.9	12.9	2.3
충남	17,912	4.3	2,625	5.6	15,287	4.2	31,847	4.5	1.8	12.1	2.1
전북	14,603	3.5	2,633	5.6	11,970	3.3	25,667	3.6	1.8	9.7	2.1

전남	14,100	3.4	2,386	5.1	11,714	3.2	32,192	4.5	2.3	13.5	2.7
경북	19,551	4.7	3,767	8.0	15,784	4.3	34,505	4.8	1.8	9.2	2.2
경남	24,045	5.8	3,350	7.1	20,695	5.6	47,998	6.7	2.0	14.3	2.3
제주	12,252	3.0	2,327	4.9	9,925	2.7	56,271	7.9	4.6	24.2	5.7

자료: 환경부

둘째, 현행법 제58조제16항·제17항²¹⁾에서는 무공해자동차 및 무공해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전산망을 설치·운영²²⁾하도록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⑩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⑪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22) [무공해통합누리집(ev.or.kr) 개요]

○(목적) 무공해차 및 무공해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무공해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도모

○(주요기능)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록 및 보조금 지원 관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신청·접수 및 정보* 관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불편민원센터 운영 등

* 위치 및 규모, 운영기관, 이용가능시간, 이용가능여부 등 상태, 충전요금, 충전현황 및 사용 이력 등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기사업법」²³⁾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²⁴⁾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부 충전소의 경우에는 전산망에 연동되지 아니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원화된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 보임.

셋째, 개정안 제76조의28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개선 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94조제5항 제2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이후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2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82조²⁵⁾에 따른 보고·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정기검사의 주기, 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일부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5) 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생략)

6.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보급 확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보급 확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자동차의 저공해화조치 등) ①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1.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u> 2.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u>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u>저공해자동차등</u>”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u>저공해자동차등</u>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u>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u>저공해자동차등</u>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u>저공해자동차등</u>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u>저공해자동차등</u>에 붙일 수 있다.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u>제1항</u>----- ----- ----- -----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 ---. ⑫ ----- ----- ----- -----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u>저공해조치자동차등</u>-----.

현행	개정안
⑬ ~ ⑰ (생략) <u>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u> ① <u>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② <u>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③ <u>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u>	⑬ ~ ⑰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u>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u> <u>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 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 <u>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u> <u>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u>	

현행	개정안
<u>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u> <u>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제5장의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의 운행·보급 확대</u> <u>제76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전환권고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u>

현행	개정안
<u><신 설></u>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20(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①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2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제76조의21(저공해자동차의 보급)</u> <u>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②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 <u>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u>

현행	개정안
<신설>	<u>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④ <u>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⑤ <u>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u>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제76조의2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76조의2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u>

현행	개정안
<신설>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 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23(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

현행	개정안
	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 2의2. (생략)	제91조의2(벌칙) ----- ----- -----. 1. 제58조제12항 및 제76조의20제2항----- 2. 제76조의21제4항----- ----- ----- 제94조(과태료) ①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삭제> 1의5. ~ 2의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③ ~ ⑥ (생략)	<u>2의3. 제76조의21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 3.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8조제1항 및 제76조의16- ----- ----- ----- ----- ----- -----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장²⁶⁾에서는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내용을

26)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 과징금 처분

제49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 인증의 취소
제56조 과징금 처분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제58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제58조의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2 인·허가 등의 의제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 지정의 취소 등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 결격 사유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지원 등 저공해자동차 지원을 위한 조항(법 제58조부터 제58조의12까지)이 신설·개정되어왔음.

이에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던 저공해·무공해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분리하려는 것으로, 법률 체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단순 조문 이동]

개 정 안	현 행	조문 주요내용
안 제76조의16 (저공해자동차의 전환 권고 등)	제58조제1항제1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안 제76조의20(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저공해차 인증표지 발급·부착·시책 마련
안 제76조의21(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 의 보급)	저공해차 보급목표 수립 의무
안 제76조의22(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안 제76조의23(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부과·징수

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문 의 처
02)6788-5536